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2).
-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안 제56조 등).
- 발주청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2조).
-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73조 등).

II. 검토의견

1.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의 명확화(안 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3제1항)

개정안은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안 제52조의2)과 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안 제52조의3)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문에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 대상 사업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달리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협의 등의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 대상 사업의 정의를 법문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u>심층평가 대상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u>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승인기관장등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u>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예측·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u>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u>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u>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u>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사·예측·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속평가 대상”이라 한다)</u>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	--

2. 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에 있어 준용 규정 보완(안 제52조의3제7항)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2조의3제1항), 신속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되,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안 제52조의3제3항),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은 신속평가 절차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2조의3제7항).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준용 규정(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중 재협의, 변경협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¹⁾은 신속평가 절차에 있어서는

준용될 수 없는 사항임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규정 모두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례²⁾ 등을 참고하여 신속평가 절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한편, 개정안은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을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40조(조치명령 등)를 준용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의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에도 제40조의2(과징금)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과징금 부과 규정도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함³⁾.

-
- 1)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 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조정절차의 준용)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한다.
 - 3) 「철도안전법」 제26조의8(준용규정)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본다.

개 정 안	수정의견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⑦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조치명령 및 환경보전방안의 이행·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u>준용한다</u>. 이 경우 “협의 절차”는 “신속평가 절차”로,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⑦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조치명령 및 환경보전방안의 이행·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u>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u>. 이 경우 “협의 절차”는 “<u>신속평가 절차(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u>”로,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34조부터 <u>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의 규정</u>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3. 벌칙(안 제74조제2항제3호의3)

개정안은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2조의3제3항),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대상 사업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52조의3제8항),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74조제2항 제3호의3),

의무규정과 벌칙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이 일치하지 않아 수범자에게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의무규정과 벌칙의 구성요건을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7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52조의3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u>협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u>	제7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52조의3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u>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 공사를 한 자</u>

4. 부칙: 적용례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심층평가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진행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을 통한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대행이 강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심층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

서의 적용 관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한 수정의견을 제시함.

또한, 개정안은 제62조제2항4)을 신설하여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에 대하여 부칙에 별다른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대행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등 어떤 대상이나 경우부터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아 계약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시행 이후 새로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부칙)	수정의견 (부칙)
제2조(심층평가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심층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u>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u>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u>

4) 안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u>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화 실)